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전망

도 중 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일본 로스쿨의 출범 과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제도의 변화와 증거법의 개혁,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등과 더불어 법조인 양성제도의 일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논의는 기존의 법과대학 수강과목이나 수업방식 등에 대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조계, 학계, 실무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도입되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의견서 63쪽에서 법조양성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과대학원의 도입을 주창하고, 2002년 3월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조양성검토회' 제13차 회의(2002.9.30)에서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의 유

기적 연대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함으로써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법과대학원이 탄생하였다.

법과대학원 탄생의 근거가 된 동법률은, 법조양성의 기본이념, 법조양성을 위한 중핵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교육의 충실, 법과대학에서의 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와의 유기적 연대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 및 우수한 자질을 지닌 다수 법조인의 양성을 꾀하고 이로써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인적 체제의 충실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법조양성은 국가기관, 대학, 기타 법조양성에 관련된 기관의 밀접한 연대 아래, 법조양성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법과대학원이 창의성을 가지고 입학자에 대한 정확한 적성평가 및 다양성을 배려하여 입학자를 공평하게 선발하여 소수에 의한 정밀도 높은 수업을 행하여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에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 법률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고, 엄격한 성적평가 및 졸업사정을 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유기적 연대를 확보한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를 실시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Ⅱ. 일본 법과대학원의 설치 기준

고등교육제도의 탄력화, 교양교육의 개혁, 고도전문직업인의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일본 법과대학원 설치 기준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과대학원을 고도전문직업인 양성을 특화한 '전문직 대학원'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법과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적절한 명칭의 새로운 전문직 학위를 수여) 둘째, 표준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법학부 졸업생의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음) 셋째, 교원은 교육상 고도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교원자격은 교육실적이나 교육능력, 실무가로서의 능력·경험을 고려하여 전임교원 중 20% 이상은 반드시 실무가교원으로 충원)로 구성되어야 하고 넷째, 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의식한 교육(소수의 교육을 기본으로 사례연구, 토론, 조사 등에 의한 수업, 쌍방향적·다방향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 수업방법·계획, 성적평가방법을 명시하여 엄격한 성적평가 및 졸업 인정을 실시)을 실시하며 다섯째, 대학관계자나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자, 법적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한 제3자 평가(설립시 설치인가의 심사와 함께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적인 기관으로서의 수준 유지·향상을 꾀하기 위한 계속적인 제3자 평가=적격인정)를 실시하며 여섯째, 복수 대학이 연합하여 설치하는 대학원(연합대학원)의 제도화, 장학금, 학자금 대출,

수업료 면제 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충실,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는 공평성, 개방성, 다양성의 확보를 목표로 입학시험(모든 응시자에 대한 적성시험과 법학부 졸업생에 대한 법률과목시험 등) 외에 각 분야에서의 학업성적 및 학업이외의 활동실적,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Ⅲ. 일본 법과대학원의 설치 현황

이상과 같은 설치 기준 아래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3년 6월말까지 법과대학원 설치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72개 대학이 총원 5,950명을 신청하였다. 문부과학성은 동년 7월 법조관계자 11명(41%), 법과대학관계자 10명(37%), 총장 등 6명(22%)으로 구성된 '법과대학원특별심사회'를 설치하여 설치구상의 심사와 교육과정 및 교원조직의 심사를 담당케 하였다. 동심사회는 신청대학에 대한 실지역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동년 11월 66개 대학 정원 5,430명을 인가하였고, 2개 대학 175명을 보류하였으며, 4개 대학 295명을 불인가하였다. 법과대학원이 인가된 대학은 국립대학이 20개 대학 1,650명, 공립대학이 2개 대학 140명, 사립대학이 46개 대학 3,800명으로 총 68개 대학 정원 5,590명이었다. 정원은 東京대학법과대학원(국립) 및 早稻田(와세다)대학법과대학원(사립), 中央대학법과대학원(사립)이 300명으로 가장 많으며, 島根(시마네)대학법과대학원(국립) 및 熊本(구마모토)대학법과대학원(국립) 등이 30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법과대학원 지원자 수는 72,800명으로 정원의 13배수가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점으로는 법과대학원과 법과대학의 병설 및 법학수준의 저하 등을 우려한 법조양성전공과 일반학위과정으로서의 법학전공의 병설제도를 들 수 있다.

”

가운데 5,767명이 각 법과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 따라 일본의 사법시험도 궁극적으로는 법과대학원 출신자들로 자격이 제한될 것이지만,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신·구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험합격자 수도 현재 1,000명에서 향후 3,000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IV. 일본 법과대학원의 구조와 문제점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학원에는 법조양성전공이나 실무법률전공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위과정인 박사과정도 병행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병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연합대학원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大宮(오오미야)법과대학원대학과 같이 법과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대학원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향후 노정될 일본 법과대학원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과정중시형 교육의 실현

법과대학원은 일발승부형의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서 과정중시형의 법학교육·법조교육으로의 전환이라 평가되고 있다. 물론 과정중시형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낙제생을 동반하는 것이다. 즉 법과대학원을 졸업하면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출현시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 간 또는 법과대학원 간의 경쟁의식을 촉발시킴으로써 법과대학원 교육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법과대학원의 시급한 내실강화를 위해서는 법과대학원 측이 긴장감,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 상대의 존재가 유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실시가 존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자 교수의 의식개혁

과정중시형 교육이 교수측에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교수의 연구가 소홀해 지

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법률학 수준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법·법실무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구와 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모두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채용·승진인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업적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의 경우에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연구조교 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법과대학원 교수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법과대학원 교육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3. 학생에 대한 경제적 영향

기본적으로 거의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법과대학원의 제도설계는, 국가재정상의 이유로 인하여 법과대학원의 입학자 수가 용이하게 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 따라서 국가재정상의 이유에 의해 제한되어 온 점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고보조를 부정하게 되면 법과대학원의 학비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점에서 장학금제도나 학자금대출제도 등의 충실화가 대두된다 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는 법과대학원 학비의 평균치나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액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산정하여 이를 현재 수험생이 수험준비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

의 평균치와 비교·대조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점으로는 법과대학원과 법과대학의 병설 및 법학수준의 저하 등을 우려한 법조양성전공과 일반학위과정으로서의 법학전공의 병설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입학정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은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처럼 현행 합격자 수를 정원으로 하는 것은 다가올 통일 한국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력을 자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점에서 장래 3,000명 이상의 합격자 수를 목표로 그 2배수를 입학정원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도중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북대학 대학원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소년사범의 적절한 처리모델에 관한 연구』,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형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